

|        |             |
|--------|-------------|
| 의안번호   | 2204578     |
| 의 퇴 인  | 조승래 의원      |
| 회 답 일  | 2024.10.29. |
| 추 계 번호 | 24C4265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5조<br>(학교의 병설)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지역의 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 의무규정 |

## II. 미첨부 근거규정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5조(학교의 병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할 경우 신설되는 병설 특수학교 수가 증가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5조는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로 초·중·고등학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에 ‘특수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병설 특수학교가 증가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1.05% 감소<sup>1)</sup>하였던데 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95,420명에서 2024년 115,610명<sup>2)</sup>으로 4.9%증가하였고,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에 배치된 대상자 비중은 27.9%(2020

1) 2023년 교육통계연보(자료: 교육부)

2) 2024년 특수교육통계(자료: 교육부)

년)에서 26.3%(2024년)로 감소함

- 이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용을 위한 병설특수학교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증가하게될 병설 특수학교의 수와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고 있으며, 특수학교는 다시 장애유형별로 시각·청각·지적·지체·정서장애로 나뉘어 짐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소요시간 현황<sup>3)</sup> 등을 고려한 병설 특수학교 신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증가하게될 학교수 및 학교별 규모 등에 대한 추정이 어려워 소요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수 증가와 1시간 이상 통학시간이 소요되는 학생 수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개정안과 같은 병설특수학교를 허용하는 방안과 (병설이 아닌)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고, 시도별·장애유형별로 요구되는 특수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다를 수 있어 현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신설될 학교수 및 규모 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초·중·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특수학교의 시설·설비에 대한 기준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 규정되어 있어 교사의 기준면적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교육부의 초·중고 중앙투자심사 통과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학급 116명 규모의 특수학교(안성)를 설립하는데 259억원이, 27학급 150명 규모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408.50억원의 사업비가 계획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참고로,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통학 시간(편도)이 소요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2,618명이며, 2시간 이상(편도) 소요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2명임(자료: 2024년 특수교육통계)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사회비용추계과 | 정혜승 | 이진우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정혜승 | 02-6788-4627 | hs0387@assembly.go.kr |